

環境犯罪 處理上 問題點과 立法的 解決方案

이 만 중*

《 차 례 》

- I. 序 論
- II. 環境犯罪에 관한 各國의 立法例
- III. 環境犯罪 處理에 있어서 問題點
- IV. 環境犯罪의 立法的 解決方案
- V. 結 論

I. 序 論

오늘날 우리 주변 환경은 하천·토양대기를 가릴 것 없이 점차 그 피해지역이 확대되고 심각하게 오염되어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실제로 핵폭발에 못지않은 잠재적인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이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범죄행위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엄격하게 제재되고 처리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

물론 그동안 환경파괴 및 오염의 심각성을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인식해왔으며, 리우 환경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¹⁾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산업화과정에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경제논리, 즉 개발 우선적 생산적 경제정책이 환경논리를 압도하여 환경오염이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에 의한 환경오염 뿐 아니라 일반가정이나 기타 소비주체에 의한 환경침해행위 역시 만만치 않은

*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법 연구위원, 법학박사

1)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상 환경전문가들이 모여 27개항에 이르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과 「21세기를 위한 세부 실천강령」(이른바 Agenda21)을 채택하였고, 최근에는 우루과이 라운드와 별도로 GREEN ROUND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정이다.

다행히도 최근에 이르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에서 더 이상은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정부기업뿐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감시하는 속에서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경오염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형법적 관점에서 규제·처벌 하는데 따른 처리상의 문제점과 환경범죄예방을 위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환경형법 이론 전개 및 입법적인 해결방안, 나아가서는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강조 하고 이에 대한 고찰을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環境犯罪에 관한 各國의 立法例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세계 각국은 각종환경보호 입법에 박차를 가해왔다. 더욱이 최근 들어 환경자체에 대한 법의성이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짐에 따라 그동안 주로 행정법적인 규제를 가지고 환경문제에 대처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형법 속에 관계처벌규정을 두려는 경향이 대두되었고,²⁾ 특히 이러한 경향은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이 환경선진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일 본

일본의 공해방지입법은 처음에는 각 지방공공단체의 특례제정 움직임으로 시작되었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1956년의 공업용수법과 1958년의 공공용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법률이 처음이다. 그 후 1967년 8월의 공해대책기본법을 비롯하여 선박의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소음규제법, 공해관련 건강피해의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해분쟁처리법 등의 주요법률이 잇달아 제정되었다. 1970년 12월 이른바 공

2) 과거 환경문제의 규율에 있어서 형사적 제재가 빈번히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제재를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환경보호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단순한 업무수행의 강제수단정도로 파악하고 형법고유의 기능과 환경보호에 있어서 형법이 기여할 수 있는 몫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해국회에서는 공해대책기본법의 개정을 포함하여 14개 관계 법률의 개정·제정이 행하여지는 등 환경행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위의 제64회 국회에서 통과된 14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발전과의 조화조항의 제거이다. 따라서 경제우선이 아니라 환경우선의 개념이 환경행정의 원리로서 확립되었다. 둘째, 공해범위에 토양오염까지 추가함으로써 환경규제의 대상이 일곱 가지로 확대된 것이다. 셋째, 전반적인 규제의 강화이다. 예컨대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의 경우 이미 오염된 지역만 규제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전국을 규제의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넷째, 국가의 규제에 추가하여 지방 공공단체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점 등이다.

특히 일본 국민을 경악시킨 이른바 이따이이따이병이나 미나마타병 등 공해병의 발생에 따라 기업의 환경오염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형사특별법으로서 기업의 환경오염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이 법은 1970년 64회 임시국회(공해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970년 12월 25일 공포,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해범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 목적을 보면 동법 제1조에 “이 법률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사람의 건강에 관련하는 공해를 일으키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공해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내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이른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어서 동법 제5조에서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해당 배출 만으로서도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정도로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배출한 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배출에 의해 그러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지역 내에서 동종의 물질에 의한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위험은 그 자가 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는 이른바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바로 이 일본의 공해범죄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된 것이며, 따라서 이 두 법의 특징 및 문제점은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 하겠다.

2. 독일

1970년부터 1980년까지의 사이에 독일에서는 개별환경영역에 대한 많은 환경관계법령들이 제정되거나 수정, 보완되었다. 특히 1980년 3월 28일 제18차 형법개정에서는 환경에 대한 범죄행위(Straftaten gegen die Umwelt)의 장을 신설하여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환경

을 해치는 폐기물제거, 핵물질에의 무허가종신, 보호지역의 위해, 독물의 방치에 의한 심한 위험 등 11개 조문을 형법에 삽입하였다. 그 제정경로는 먼저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법전에서 환경범죄를 규정하도록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1978년 9월 8일 연방정부가 환경범죄극복법안(Entwurf eines 16. Strafaderungsgesetzes - Gesetz zur bekampfung der Umweltkriminalitat)을 성안하였는데 여기에서 환경에 대한 범죄행위(Straftaten gegen die Umwelt)라는 독립된 장을 마련하고 공공위험법으로 하였다. 이 환경범죄 극복법안을 약간 수정, 보완한 후 확정시킨 것이 제18차 형법개정 중 환경범죄에 관한 규정들이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수질오염(Verunreinigung eines Gewassers)에 관하여 수질을 정당한 권한 없이 오염시키거나 그 특성을 유해하게 변경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며(동조 제1항), 미수범과 과실범도 처벌하되 과실범에게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과하고 있다(동법 제324조 2항, 3항). 다음으로 대기오염 및 소음(Luftverunreinigung und Larm)에 관하여는 시설물 특히 공장이나 기계의 운영시에 행정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먼지, 가스, 증기 또는 냄새나는 물질의 방치에 의하여 그 시설물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 사람, 동물, 식물 또는 기타 물건을 심하게 해할 수 있는 대기의 자연적인 구조의 변경을 야기하거나 시설물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 타인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소음을 야기한다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동법 제325조 1항), 미수범과 과실범도 처벌하되 과실범에게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동법 제325조 3항).

또한 환경을 해하는 폐기물 제거(Umweltgefahedende Abfallbeseitigung)에 대하여는 독물 또는 사람이나 동물에 공공적 위험이 있으며 감염될 수 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산출할 수 있는 폐기물, 폭발위험, 자연발화위험, 또는 미미하지 않은 방사성이 있는 폐기물 또는 종류, 성분, 량에 있어서 수질, 대기 또는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해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그에 관하여 허가된 시설물의 밖에서 또는 규정되거나 허가된 절차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하여 처리, 저장, 침전, 방출하거나 제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동법 제326조 1항).

그리고 시설물의 무허가 운영(Unerlaubtes Betreiben von Anlagen)의 경우에는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금지명령에 반하여 핵공업시설물을 운영 및 운영 준비하거나 휴업중인 핵공업 시설물을 점유하거나,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분해 또는 그러한 시설물과 그의 운영을 중대하게 변화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동법 제327조 1항), 연방안온보호법(BImSchG)상의 허가를 요하는 시설물 또는 폐기물처리법상(AbfG)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현행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허가나 설계도의 확인

을 받지 아니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금지명령에 반하여 운영한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동법 제327조 2항).

다음으로 핵물질에의 무허가중사(Unerlaubter Umgang mit kernbrennstoffen)에 관한 규정으로서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집행할 수 있는 금지명령에 반하여 핵공업시설물 밖에서 핵물질을 취급·가공 및 사용한자, 허가에 약정된 취급·가공 및 사용에 관한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허가에 명시된 공장 또는 그 위치를 중대하게 변경한자, 그리고 핵물질을 국가의 관리밖에 보관, 운송, 수입, 수출 또는 이 법의 시행구역내로 가져오거나 이 법의 시행구역 밖으로 내보내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동법 제328조 1항).

그리고 보호구역의 위태화(Gefährdung Schutzbedürftiger Gebiete)에 관하여서는 대기오염 또는 소음에 의한 해로운 환경영향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기상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대기오염에 의한 해로운 환경영향이 심하게 진전할 우려가 있는 구역에 관한 연방안전보호법(BlmSchG)에 의거하여 발하여진 법규에 반하여 그 구역 내에서 시설물을 운영한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이러한 구역 내에 전단의 법규를 근거로 발해진 집행력 있는 명령에 반해서 시설을 운영한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나 이와 같은 규정은 자동차,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동법 제329조 1항). 뿐만 아니라 자연보호구역, 국립공원 또는 자연보호구역으로서 임시로 보호되는 평지 내에서 명하여진 법률규정 또는 집행력 있는 금지명령에 반하여 토지의 매장물 또는 삼림을 제거한자, 늪·소택지·습지 또는 그 밖의 습한 지역에 배수한자 또는 삼림을 개간한자로서 그로 인하여 그러한 지역의 본질적 성분을 해한 자는 동일하게 벌하고 있으며(동법 제329조 3항), 과실범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29조 4항).

다음으로 중대한 환경의 危殆化(Schwere Umweltgefährdung)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귀중품 및 공공의 물의 공급 또는 국가의 승인된 온천을 해한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며(동법 제330조 1항), 독물의 방치에 의한 심한 위태화(Schwere Gefährdung durch Freisetzen von Giften)에 대하여 독물을 대기·해양·토지 등에 살포하거나 방치하여 타인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을 야기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있으며(동법 제330조a 제1항), 과실범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30조a 제2항). 또한 동법 제330조 1항과 제5항, 그리고 동법 제330조a의 경우에 범죄를 행한 자가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 위험을 자발적으로 방지하였다면 법원이 작량감경을 할 수 있도록(동법 제330조b).

끝으로 몰수(Einziehung)에 대하여 환경범죄행위에 의해 발생되거나 그 범행 또는 준비에 필요하였던가 확실히 있었던 물건 및 그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30조c).

3. 미 국

미국은 일찍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를 보통법상 불법행위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Nuisance(불법방해), Trespass(불법침입) 및 Negligence(부주의)로 인정해 왔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오염의 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하여왔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환경오염이 광역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에 와서는 환경오염의 규제수단으로서는 그 영향력이 크게 미흡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런 이유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개별대책법을 총괄하고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확립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국가 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이 1970년 1월 1일 제정,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NEPA의 주요내용은 첫째, 환경과 인간의 조화와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선언 둘째, EIS 절차(환경영향 평가제도)를 포함한 일련의 행정절차의 확립이고, 셋째는 환경문제에 관한 CEQ(환경위원회)의 설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보전 개별입법으로는 환경개선법(Environmental Improvement Act, 1970),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1970), 연방수질오염규제법(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1970, 1972), 수질개선법(Water Quality Improvement Act, 1970), 고체폐기물처리법(Solid Waste Disposal Act, 1970), 소음규제법(Noise Control Act, 1972), 연방살충제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1972), 해양보호법(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es Act, 1972), 해안지역관리법(Coastal Zone Management Act, 1972), 자원보존회복법(Resource Conversation and Recovery Act, 1976) 등이 있다.

미국은 연방헌법개정의 절차적 곤란성으로 연방헌법에 환경권을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각주 헌법(예컨대 일리노이주, 뉴욕주, 메사츄세츠주, 펜실베이니아주, 미네소타주, 버지니아주 헌법)에서는 1970년초부터 환경권 내지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4. 우리나라

과거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규제는 주로 행정법적인 규제·단속차원에서 이루어졌다. 1963년의 공해방지법, 1977년의 환경보전법, 그리고 1990년의 환경정책기본법을 위시한 분야별 환경관련개별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행정법적 측면에서의 지도·단속의 한계가 점차 노출되고 윤리적·규범적·사회적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중대한 위법행위인 환경범죄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형사적 제재방법을 단순히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정도로 파악하여 환경보호에 있어서 형법의 고유기능과 역할을 과소평가한 경향을 반성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형법의 역할을 새로이 분석·구축해서 환경보호에 관한 형법고유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기능을 확인하고 실천할 시점에 와있다는 인식 하에 1992년 4월 8일 입법 예고된 형법개정시안에서는 일반적인 환경범죄의 신설을 예고한 바 있고, 이미 1991년 5월 31일에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390호)을 제정하여, 특히 기업에 의한 환경오염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조치를 하였다.

1) 형법에 의한 제재

현행 형법각칙상의 규정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처벌할 경우 적용 가능한 법조로는 살인죄(제250조), 상해죄(제257조 1항), 업무상과실치사상죄(제268조), 손괴죄(제366조), 음용수 독물 기타 유해물혼입죄(제192조 2항), 음용수 또는 수원 독물·유해물혼입죄(제193조 2항), 음용수 혼독치사상죄(제194조) 등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에선 고의·과실의 인정, 인과관계의 입증, 행위주체의 확정이 곤란하다는 이론적 문제점이 있다.

과거 형법개정시안은 제26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중 제277조는 ‘음식물의 오염’이라고 하여 식품공해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제279조는 ‘환경오염’에 관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발생시킨 경우를 처벌하는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84조는 제277조와 제279조의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다. 이에선 형법이 환경침해행위로 인한 중대한 법익침해의 경우를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즉 형법개정시안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만을 환경범죄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환경자체는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형법의 중요한 핵심은 아직도 형법이 아닌

개별 환경행정법규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구성요건상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그 실효성이 크게 의문시 된다는 점이였다.

2) 특별형법에 의한 제재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90호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는 바, 이는 일본의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내용상 거의 같다. 동법의 특징으로는 첫째,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통적 형법이론과는 달리 처벌요건을 완화하는 등 처벌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둘째, 환경범죄의 범위를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 환경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법은 일본의 공해범죄법과 마찬가지로 운용에 있어서 그 유용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3) 행정형법에 의한 제재

1991년 이후 기존의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환경행정법 체계가 등장하였으며, 대부분이 처벌조항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Ⅲ. 環境犯罪 處理에 있어서 問題點

환경범죄는 전통적인 형법이론을 가지고는 설명하기 곤란한 몇가지 처리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 환경범죄 특성상 문제

첫째, 침해의 간접성이다. 즉 환경오염 자체는 유해물질을 배출·폐기할 경우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만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발생은 유해물질의 배출·폐기를 통하여 대기·토양·수질 등이 오염된 후 간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형사법적 제재시에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결과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침해의 발생원인 및 정도의 불명확성으로서, 환경범죄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침해를 가하기 때문에 위험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가 밝혀지더라도 책임을 추궁하는 단계에서는 인과관계의 유무, 즉 가해자가 누구인가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침해의 완만성을 들 수 있다. 환경범죄는 대부분 유해물질이 서서히 반복 또는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그런 행위의 반복과 유해물질의 축적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2. 형사책임의 주체 해석상 문제점

형사책임의 주체는 환경범죄의 발생형태에 따라서 구조형과 사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구조형은 기업시설 내지 산업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하여 또는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영방법의 잘못으로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는 생산, 배출 또는 기업시설 등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는 자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고형은 기업시설이나 시스템에는 결함이 없으나 생산활동의 운용면에서 결함이 생겨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에는 현장책임자나 임무를 담당하는 기술자, 노동자 등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계설치시의 과실, 또는 기업에서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다는 추정의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 고의 내지 과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의 주의의무위반, 시설에 대한 결함 발견시의 주의의무위반 등 개개의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견해

환경범죄에 있어서 책임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확정함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환경범죄에 있어서는 가해행위가 많은 행위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구나 현대의 복잡한 기업조직 속에서 집단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에 의하여 언제부터 발생한 결과인지도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³⁾

현행 헌법은 개인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구체적 피해발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자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에 있어서는 책임과 재량권이 현저하게 열등한 위치에 있는 하급관리자나 기술자를

3) 권문택, 『형법학연구』, 박영사, 1983, 174면.

중심으로 처벌함은 부당하며 행위자의 특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경영자 내지 기업자체의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형법상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전통적 입장에 의하면 법인에게서는 자연인과 달리 현실적의지와 행위가 있을 수 없고 현행형법상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자유형을 부과할 수 없다는 등의 것을 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인의 처벌은 각종 행정형법, 경제통제법, 조세관계법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위반행위를 실행한 자를 벌하는 동시에 사업주나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⁴⁾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은 법인 자체의 행위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행위자의 범죄에 대하여 법인이 사용자로서의 선임·감독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그러한 책임은 범죄주체자로서의 책임이 아닌 단속의 편의상 부담하는 특수한 책임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법인에는 비난의 가치 있는 의사능력이 없고 법인에는 실행행위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는 견해는 형법상 도의적 책임론을 강조하는 입장에 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점차로 증대하여 왔고, 활동영역도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온 것에 주목한다면 위와 같은 전통적 견해에 의해서 법인의 범죄주체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히 하여 정의·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증가하는 기업범죄 특히 환경범죄에 있어서 기업메커니즘의 운영에 결함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는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유해물질의 배출이 있었으나 행위자를 특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행형법이론으로는 법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법리라고 생각한다.

새로 대두되는 기업범죄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있는 이외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되어왔고, 사회적 책임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인에게도 책임비난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리고 양벌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책임의 근거를 과실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법인의 범죄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법인의 범죄주체로서의 처벌의 당위성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4) 개별환경행정법규는 대부분 이 양벌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특별형법인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그 제5조에서 일본의 공해범죄법을 본받아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기업조직체 책임론에 관한 견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론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조직체책임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기업재해에 있어서는 기업조직체 활동의 톱니바퀴에 불과한 각 개인의 행위를 별도로 떼어서 논할 수는 없고 기업이 조직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 그 조직체활동을 먼저 全一體的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각 개인행위가 조직체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을 고려하여 각 개인의 형사책임을 논해야한다.”고 한다. 이 이론은 기업조직체의 범죄주체성을 인정하고 그의 위법활동을 억지시키기 위하여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견해라고 본다. 일본에서 이 이론을 전면적으로 채택한 판결은 이른바 熊本 미나마타병 형사판결이다.

기업조직체 책임론을 채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첫째, 조직활동 분담자 중의 어느 누구에게도 가별적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체의 조직활동은 가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체의 조직활동은 전일체적으로 파악되므로, 조직활동 분담자의 교체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체가 책임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유해물질 등은 장기간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후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승계적 공범이론을 적용하기도 곤란하게 될 수 있는데 기업조직체 책임론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체의 조직활동을 전일체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속하는 여러 공장에서 각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주민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 각 공장의 배출만으로는 그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기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기업체 자체를 범죄행위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기업체간의 동시범은 물론 공범의 성립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이익추구활동에 의하여 위험을 발생케 하는 사회적 강자로서의 기업체는 주민과 소비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를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유해성 및 위험성에 대하여 작은 불안감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땅히 시행하여야하며 기업체, 소비자, 주민간에 있어서는 상호신뢰의 원칙이 존재하여야하며 기업체는 그의 조직활동에 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오늘날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사람의 생명·건강을 심히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 의한 위법행위에 비하여 기업체의 행위에 의한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론적 논거로서는 기업조직체책임론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인과관계 축정의 곤란

환경범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확정을 강력히 요구하게 된다면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역학적 인과관계 이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외에 다른 방법론으로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전제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추정사실)을 추정하는 것이며, 추정에는 사실상의 추정과 법률상의 추정이 있다.⁵⁾

법률상의 추정이 대표적인 규정으로서 일본의 공해범죄법 제5조를 보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당해 배출만에 의해서도 공중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배출한 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배출에 의하여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에 동종의 물질에 의한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은 그자가 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추정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본의 藤木英雄 교수는 이와 같은 추정규정에 관하여 유해물질의 배출과 공중의 생명, 신체에 위험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추정규정을 설정하여 소정의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기업측이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발생이 자기회사가 배출한 유해물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반증하지 못하는 한, 기업의 책임이 되는 것으로, 즉 거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는 것이고, 공해사건은 거의가 과학기술과 관련이 있고, 또한 유해물의 발생의 근원이 되는 기업활동에 대해 공장·사업자 측이 배타적 독점적인 정보를 소유하고 있어 외부인은 이를 쉽게 파해칠 수 없는 경우에 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입증의 원칙을 적용하여서는 부당하게도 기업측에 유리하게 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평관념에 반하므로 예외가 인정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공해범죄법 제5조의 추정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5) 환경범죄에 있어서도 결과범의 경우에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범죄는 그 특성상 복잡한 오염원인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거나 누적되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확정이 사실상 곤란할 때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위 역학적 인과관계이론과 인과관계의 추정이 이용되고 있다. 역학적 인과관계론은 오염원인물질의 유해성, 오염경로나 질병의 메커니즘 등 원인과 정도에 관하여 완전하고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는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론이며, 독일과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한 이론이다. 이에 인과관계의 추정이란 유해물질의 배출과 공중의 생명·신체의 위험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소정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오염 행위자 측에서 위험발생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법률상의 추정규정을 두는 방법이다.

있는데, 형사법에는 “의심스러우면 별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원칙이 적용되므로 인과관계는 추정이 아니라 확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공해는 대부분 복합적이며 동종의 오염원이 다른 곳에도 있는 경우가 많고, 이때 인과관계의 확정을 요구하면 결국 공해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지우지 못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추정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형법상의 대원칙을 희생해야 할 만한 효과가 이 경우에 있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공장 밀집지대에서의 경우에 그 오염을 증대시키는 공장이 계속 진출해온 경우에도 개별공장의 배출량이 전술한 요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추정규정은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생각건대 환경범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확정을 요구한다면 환경범죄의 특성인 침해의 간접성, 원만성,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을 보호하고, 일반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추정규정을 두는 문제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본의 공해범죄법 제5조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그 증명력이나 합리적 추인에 관한 점 등에 관하여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고의 과실의 판정상 문제

환경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행위무가치와 결과무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행위 무가치는 고의범의 경우는 범의침해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과실범에 있어서는 주의무위반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환경범죄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여 본다.

1) 고의

고의의 본질에 관하여 주장되는 견해는 우선 의사설과 인식설(표상설)로 나누어지는데 전통적 견해는 의사설이었으나 최근에는 고의를 지적요소로서의 인식과 의지적요소로서의 의사를 통합한 것으로 보는 인용설이 통설이며 판례의 태도이다. 이러한 인용설은 지적요소로서 불법을 형성하는 요소를 인식하고 의지적 요소로서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용설을 취할 경우, 환경범죄에 있어서는 유해물질 등을 배출한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의 결정이 있으면 고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사람의 생명·건강을 보호범의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사람의 생명·건강에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과 의사, 그리고 배출행위와 위험발생사이의 인과관계의 인식을 가질 때 비로소 고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환경범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체가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또는 설치했다 하더라도 단속을 대비한 임기응변식의 형식적인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그것이 환경에 오염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 또는 환경오염을 일으켜 사람의 생명·건강에 위험을 발생케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래도 별수 없다는 의사를 가지고 환경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과실

(1) 환경범죄에 있어서의 예견 가능성

우리 형법은 제14조에서 “정상의 주의를 태만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의 경우에는 과실범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국의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입법이 모두 과실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생각된다.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주의의무위반과 결과발생 및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그리고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환경범죄에 있어서 논점이 되고 있는 예견가능성의 역할에 대하여 그 정도, 내용 및 예견가능성 판단의 대상을 둘러싼 과실범이론의 전개를 고찰하기로 한다.

결과의 발생과 인과관계의 본질적 요소는 예견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것은 객관적 표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의의무위반을 예견의무위반으로 보고 그 전제로서의 예견가능성을 과실론의 중심에 놓게 되면 예견가능성이 내용은 고도의 것이 되고 과실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예견하는 것이 가능했었을 것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서 예견가능성의 내용을 객관화하여 과실이 갖는 위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견해가 주장되기도 하였고, 이 견해에 따라 객관적 예견가능성을 중심으로 환경범죄에 있어서는 과실의 예견가능성을 결과발생에 대한 구체적 예견가능성으로 족하다고 하여 危懼感說에서 주장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견해도 있다.

이른바 위구감설은 藤木英雄 교수가 처음 주장한 이론으로서 예견가능성 존재 여부는 예견가능성이 구체적인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행위 당시 행위자에게 결과발생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위구감)이 있었던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결과회피의무에 대한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막연한 불안감 내지 위구감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위구감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단순히 막연한 불안감(위구감)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당하게 과실범의 성립범위가 확대되어지며 실제로 미지 미경험이기 때문에 예견가능성이 없는 사태에 대하여 단순한 위구감의 정도로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기 때문에 설사 그 피해에 대한 다소의 위구감이 인정되더라도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책임만 지워야 한다고 한다. 둘째는 이미 도로교통에 있어서 위구감은 항상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실책임을 요건은 거의 항상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신뢰의 원칙은 위구감설 때문에 적용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한다. 셋째는 위구감설이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과실이론이기 보다는 과실범에서 결과를 추상적 위협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넷째는 종래의 과실이론을 무리하게 수정하면서 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자의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사법처리 절차상 문제점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개별 형사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그 제재가 피해액에 비하여 경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체적으로 환경사범은 약식처리 되었으나 벌금액도 1백만원~3백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와 같이 저조한 구공판 회부율 또는 높은 약식 기소율 등은 약간의 벌금납부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심어주고 결국 기업주들에게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공해배출 업주들은 벌금 얼마 정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이러한 환경법률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의 경우, 어떤 선박이 해양을 오염시키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해양오염방지법 제71조, 제5조), 실제로 바다에 고의로 기름을 유출한 사건보다는 안개 속에서의 선박충돌 등 과실에 의한 기름유출사고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해양오염방지법 제71조 제2항에 해당되어 징역 3년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나, 이에 비해 거대한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액은 수십억, 수백억 이상에 달하며 어떤 경우는 피해에 대한 회복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피해액에 비하여 현행 법정형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징역

형이 법정형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선주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란 거의 드물고 집행유예 또는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위반행위 제재체계 복잡화

현행 환경행정법을 중심으로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벌과 행정제재를 동시에 부과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유형도 있다. 그리고 형벌이나 행정제재만 부과하는 유형도 있다. 전반적으로 형벌이 행정제재만 부과하는 유형도 있다. 전반적으로 형벌이 행정제재보다 중하다는 전제에서 불법성이 큰 위법행위는 형벌로, 불법성이 적은 위법행위는 행정제재로 규제한다는 원칙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유형의 존재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제재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여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다. 현행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계가 복잡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를 정한 규정이 하나의 환경행정법 내에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는 단행 법률의 말미에 벌칙의 장으로 독립되어 규정되어 있지만, 행정제재의 경우에는 산재되어 있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제재 부과 유형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행정제재와 형벌은 질적·양적 차이가 있음에도 양자를 여러 가지 형태로 혼합시켜 제재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IV. 環境犯罪의 立法的 解決方案

1. 입법론적 보완

우리나라의 환경범죄의 처벌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까지 행정법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 환경행정의 원만성을 보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환경오염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여 환경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형벌법규를 제정하는 등 입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1) 환경사범의 형법전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범죄에 대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개별적인 환경규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보다, 이러한 법규를 통합하여 형법전에 수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형사법적 제재방안이 마련되면 환경문제에 보다 효과적이며, 분산되어 있는 환경 보호 위반에 관한 처벌규정들을 형법전에 규정함으로써 환경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가벌성을 강조하고,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게 하여 일반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법집행의 원활을 꾀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환경범죄의 어느 범위까지를 형법전화 하느냐 하는 입법기술상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는 바, 현행 환경관련 법규전에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형법의 제24장(살인의 죄), 제25장(상해와 폭력의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규정하고 기타의 환경범죄는 현행과 같은 특별법규로 규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된다.⁶⁾

2) 입법기술의 합리화

환경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법규 위반행위 중 중요한 범죄행위에 단순 질서위반행위를 구분하여 전자는 형벌을, 후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2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현행 행정제재에 대한 각종 규정의 경우에도 하나로 집적하여 하나의 章으로 규정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제재내용의 적정화

환경범죄에 대한 현행제재의 내용은 균형이 맞지 않으며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사소한 범익 침해에 까지 형벌을 부과하여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형벌과 행정제재의 체계를 혼동시키고 있으며, 범인 처벌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요건 하에서 한정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위반에 대하여 과도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사소한 범익침해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행정제재를 부과하여야 하며 범인에 대한 과도한 일괄적인 제재

6) 환경형법의 구성요건을 형법전 밖의 법령에 백지 위임하는 형식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역시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한 입법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현행 형법의 백지위임의 입법형태는 동법 제112조의 중립명령 위반죄 하나에 불과하고 동 법 시행이래 유죄가 적용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음).

조항을 폐지하여야 하겠다. 또한 형벌 내에서 자유형과 벌금형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자유형의 경우에는 그 형량을 다소 낮추고 벌금형의 경우에는 그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범인 처벌체계의 합리화

현재 범인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제재는 범인에 대한 형벌인 벌금형에 비해 그 타격의 정도가 훨씬 큰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행정처분 중 행정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행해지는 고유한 행정법상의 처분이 아닌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범인에 대한 유일한 형벌인 벌금과 그 타격의 정도를 대비하여 제재를 전면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행정제재의 타격의 정도를 검증하고 부과절차를 검토하여 형벌화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⁷⁾

2. 단속기관의 전문성 제고

1) 특별 사법경찰관리의 내실화

현재 환경사범 단속관련 특별사법 경찰관리는 관할지방 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공무원과 각 시·군·구의 환경청 또는 환경위생과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된 공무원이 있는 바, 대부분이 환경단속경험이 미숙한 하위직 공무원들로서 보직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사서류 작성, 관련자료 조사방법, 영장청구, 증거보전 등 사법경찰관리로써 갖추어야 할 전문교육이 요구되며,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도 강화하여 명실공히 환경사범을 단속하는 수사요원으로서 사명감과 적극적인 자세를 부여하여야 하겠다.

2) 일반경찰의 적극적인 단속활동

일반적으로 경찰은 자신들의 고유 수사업무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단속을 행정기관에 맡기고 환경사범 단속에 미온적이며 전담기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7) 범인에 대한 행정제재는 대체로 과태료만을 인정하고 그 외의 제재는 모두 형벌로 파악하여야 한다. 즉 범인의 해산에 해당하는 인·허가 취소, 조업정지, 공급거부 등은 모두 형벌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환경범죄도 살인·절도·방화와 같은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형사범죄와 동일한 차원에서 논해져야 하며 그 막대한 사회적 해악성에 걸맞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사활동에 임하여 줄 것이 요구되고 있다.

3) 검찰·법원의 환경 전담부서 운영

환경범죄 수사는 일반범죄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환경범죄에 대한 최종적인 수사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의 경우에는 단순히 행정관청의 보고에 의한 사건의 사후처리에만 급급한 실정이며 검찰청 별로 환경사범 전담 검사 1~2명이 고작이다.

따라서 일선 검찰청에도 환경범죄를 총괄하는 부서를 확보하고 환경범죄에 대한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환경사범을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법원의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환경관계 소송에 대한 합리적인 재판을 이루기 위하여 환경관계 전문지식 습득 및 법원 내 전담부서의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

V. 結 論

우리헌법 제35조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국민소득향상 등 경제적인 신장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급증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환경보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점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1992년 브라질의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이 참여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27개항의 리우선언을 채택하는 등 이제 환경문제는 자연생태계의 위기현상 초래 및 인류의 생존과도 관련되어 있어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 없이는 지속적인 국가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며 바야흐로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윤리와 환경의 시대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형사 제재의 수단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환경범죄의 처리상 직면해 있는 문제점과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찰을 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환경범죄는 침해행위의 유형에 있어서도 새로운 수법들이 출현되고 있어 처단방법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종 환경관련 법령의 재개정

도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범죄유형에 발맞추어 수사기법의 다양화와 재판시 유의점 등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전문부서와 관계자들의 관심 또한 더욱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더구나 환경범죄에 대한 입법화는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는 바, 날로 심각화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체계와 같이 개별적인 환경규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보다는 이러한 법규를 통합하여 형법전에 수용하는 문제도 검토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범죄는 막대한 사회적 해악성을 가지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국민 각자가 서로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자이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효율적인 환경범죄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겠다.

주제어 : 환경형법, 입법화, 환경범죄 예방, 단속활동 전담기구, 환경오염,
특별 사법 경찰관리

【參 考 文 獻】

- 권문택, 『형법학 연구』, 박영사, 1983.
- 김승한 역, 『인류의 위기』, 삼성문화문고, 1974.
- 김일수, “우리나라의 서독에서 환경보호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 김종원, “공해의 형법적 규제,” 『환경문제의 현황과 대책』, 법무연구원, 1987.
- 서돈각, “공해와 환경,” 『법과환경』, 삼영사, 1977.
- 신동운,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책방안,” 『90년대의 범죄와 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원, 1990.
- 안기희,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변천과 앞으로의 방향,” 『통일론』, 1994.
- 이기우, 『환경법』, 학현사, 1993.
- 이만중, 「환경범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이 철, 「공해범 처벌에 관한 소고」, 『검찰』 제1집, 1998.
- 이형국/박상기, 「환경범죄와 형법의 역할」, 『형사법연구』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1990.
- 조명래,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 『환경과 행정』, 1997.
- 홍준형, “버려진 환경, 지켜지지 않는 약속”, 『법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1994.1
- 米田表邦, 「公害·環境侵害と刑罰」, 『現代刑罰法大系』 第二卷, 日本評論社(東京), 1983.
- 福田 平/大塚 仁, 『刑法總論 I』, 有斐閣, 1979.
- 山口裕之, 「みなまた病 刑事裁判の争点とその概要」, 法律のひろば 제41권 6호, 1988.

【Abstract】

**Problems of the Environment Criminal Procedures
& Legislative Solution**

Lee, Man Jong

As increase of GDP & economic development, our interest in quality of life and right that live in more pleasure environment also increasing.

Moreover, international concerns with environmental problems are more and more emphasis.

Now, environmental problems are relate with human survive, so it is very important thing not only a portion of the country but also all around the world. We must work together to deal with environmental problem in 21st century.

In this article,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environment, study on efficient legislative environmental solution.

Recently, as appearance of a new method that violate the environment, it requires correction of legislation and rhetoric.

Of course all factors that involve in relative respect must make an effort at system innovation and concerning over problems needed.

<p>Key Words : environmental criminal law, legalization, prevention of environmental crime, regulatory agency, environmental pollution,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p>
